

조선사록 역주 3, 동월, 『조선부(朝鮮賦)』와 『조선잡지(朝鮮雜誌)』 (이하 ‘조선부’)

(참고문헌: 김한규, 사조선록 연구 - 송·명·청 시대 조선 사행록의 사료적 가치,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아래 page 번호는 참고문헌의 내용)

1. 동월 (董越)

- 1488년 (명 효종 홍치 원년/ 조선 성종 즉위 19년) 효종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조선에 파견된 반조정사(頒詔正使). 효종의 동궁(東宮)시절 시강(侍講).

- 동월의 인격과 성품에 관한 기록:

“동월은 풍채가 엄숙하고 진중하며 언동에 준칙이 있어, 남의 좋은 점을 말하기를 즐겨하고 가볍게 허락하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여 남의 단점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겼으며, 바르게 충고하는 일을 잊지 않았고, 욕심이 적었으며 검소하게 생활하려 힘썼다. 봉록이 들어오면 언제나 종족(宗族)과 지인들 가운데 가난한 이를 도와주었다.”

- 조선에 파견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58세로, 효종 황제가 동궁일 때 시강까지 지낸 고위 관리를 지긋한 나이에 사신으로 선발한 것은 조선이 사대하는 정성이 지극하여 특별히 예우하는 것임을 강조했다고 함. (p. 213)

2. ‘조선부’ - 총 464구의 부(賦) 형식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

- ‘조선잡지’는 ‘조선부’의 자주(自注)형식¹으로 ‘조선부’를 위한 보충자료.

¹ 사영운(謝靈運)의 「산거부」 예에 따라 스스로 주해. (p. 213)

- 역대 명사들이 기행시를 남긴 것과 달리, 동월은 조선을 다녀온 뒤에 보고 들은 바를 있는 기행문 형태로 서술.

- 「자서(自序)」를 통해 사신으로 충실하게 자순(咨詢)의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보고 관찰한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기 위해 시(詩)나 사(詞, 시문)보다는 산문인 부(賦)의 형태가 될 수 밖에 없었던 듯 함. 또한, ‘조선부’가 동월이 직접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한 것으로 북경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집필이 시작되었으며, 부사의 기록을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음. (pp. 215-6)
- “부란 그 일을 두루 펴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 무릇 산천과 풍속, 인정, 물정 등에 대해 날마다 두루 돌아보고 자순하여 얻은 것은 종이쪽지에 적어서 건사에 넣어두었지만, 이렇게 얻은 것 가운데서도 [다 쓰지 못하고] 빠뜨린 것이 매우 많다. ... 동료인 황문 왕한영 군이 기록한 것을 보고 비교하여 정정할 수 있었다. 사신의 행차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모두 빼지만, 그래도 줄여서 간편하게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주로 있는 그대로 말해서 일을 펴 보이는 데 뜻을 두었기 때문에, 실로 그 말이 번잡하고 중복되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 ‘조선부’ 집필 자료

- 동월이 직접 보고 들은 것
- 부사 왕창(王敞)이 기록한 것
- 조선 관반사 허종이 제공한 『풍속첩(風俗帖)』²
- 『일통지(一統志)』를 비롯한 한중 양국의 각종 ‘지서(誌書)’들

- 조선의 문화와 사회를 관찰하면서 중국과 유사한 것에 대해 우호적인 관심 → 언제나 중국의 것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중국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해

² 성종실록에 따르면 허종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의 기록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조선의 미풍양속을 새로 지어 풍속첩을 만들었다고 함.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는 이현(李賢) 등이 명 영종 천순 5년(1461)에 편찬한 것으로 「외이전」에서 이전 정사의 동이전 등을 인용하여 조선의 역사의 사회, 풍습, 산천, 토산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음. (pp. 217-218)

관심을 보임. 기사를 통해 조선의 문화가 중국과 일치되는 것은 곧 ‘예의’임을 강조. (pp. 221-2)

- 건배사, 가마, 활, 건축, 술, “탕을 한번 올릴 때는 반드시 사발의 수가 다섯이 되게 하고, 왕이 몸소 올리지 않는다. 오직 이 예만이 중국과 같지 않다,” “예의는 역시 중국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 세번 향을 올리고 세번 고두하는 예를 더했다.”
-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과 각종 자료의 확인을 통해 기왕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기도. (예. 베의 재료, 종이의 재료, 남자 두건의 형태, 말의 크기)³

● 3년간 정성을 다해 저작되었으며 부의 형식으로 읽히기 쉬워 출판과 동시에 한중 양국에서 널리 읽혔다고 함. 조선에서는 국왕의 명으로 출판되었으며, 조선의 군신들은 ‘조선부’를 읽고 때때로 그 내용을 거론하기도 했음.⁴ (p. 219)

● 창화시가 전혀 없으나 조선부의 특수한 양식 때문에 남아있지 않을 뿐 동월의 창화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꼽혔음. (p. 240)

- “집어(緝御)⁵가 있어 심부름을 해주고, 종이와 먹이 있어 창수(唱酬)를 위해 제공된다.”
- “허 이조(판서)가 ‘왕이 시 짓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해서, 비로소 그 뜻을 깨달았다. 아마도 내게 시를 지어 주려고 했지만 그 시재(試才)가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겸연쩍게 여겼던 것 같다고 한다.”

³ “베는 삼으로 짜는, 모시로 이름이 난 것은 대개 잘못 전해들은 데서 비롯되었다. 종이는 닥나무로 만드는데, 누에고치로 만드는 것으로 여겨진 것은 그 다듬는 솜씨가 정교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남자의 두건이 당의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과실수 아래를 지나간다는 말도 3 척이 아니다”라고 정정 → 명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누가 왜 관심이 있었을까?

⁴ 조선의 군신들은 ‘조선부’를 읽고 때때로 그 내용을 거론하기도 해서, 연산군 시기에 승정원에서 “동월의 ‘조선부’에서 ‘턱 밑에 구슬을 드리운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조롱한 것이니, 구슬갓끈을 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아뢰었고, 대사헌이 “전번 동월과 왕창이 왔을 때 부녀자가 교자를 타고 지나가서 두목의 무리가 그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포복절도하였고, 동월은 ‘조선부’를 지으면서 그 사실을 들어 조롱하였으니 일체 금지하소서”라고 간쟁. → 왜 조롱할만한 것인지? 왜 금지시키려고 했는지?

동월 이후에 조선을 내방한 어떤 명사(중종 32년에 조선을 찾은 공용경 등)는 『속조선부』를 짓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음. ‘조선부’는 『사고전서』 등 여러 서책에 실렸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되어 널리 읽혀졌으며, 많은 도서에서 중요한 사료로 인용되었다.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조선에 파견한 사신들이 귀국한 뒤에 저술한 기행문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졌음. (p. 220-1)

⁵ 번갈아 가며 시중을 드는 것을 이르는 말.

- 중종조의 도승지가 말하기를 “천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면서 즐긴 때로는 동월이 왔을 때만한 적이 없었는데, 조용히 머무르며 시문으로 문답한 말이 많이 있었고 성종을 칭찬한 것도 지극하였다.”

3. ‘조선부’의 내용

- 첫 부분: 조선의 위치와 지형, 풍속 등을 서론 삼아 개괄

- 팔도의 구분과 지형적 특색
- 조선의 건국과 왕조의 정당성
 - “신라와 백제, 탐라 등이 지금은 모두 [조선의] 소유가 되었다.” - 고구려가 아니라 탐라가 언급되어 있음.
 - 황제가 조서를 내려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하고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허락함
- 양반, 농민, 내시, 상거래, 세금, 유생, 인재등용, 의복, 노인공경, 상례(喪禮), 향음(鄉飲)에서의 주도, 혼인, 제사 등
- “대대로 양반의 반열에 오른 자이더라도 흑시라도 몇몇하지 못한 짓을 하면, 모두 예의 바르게 그를 대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선의 신분제가 예의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 (p. 222-3)

- 둘째 부분: 압록강을 건넌 뒤부터 한양에 이를 때까지의 여정과 한양에서의 사신 활동, 연회 등을 노래

- 산천지형에 대한 관찰 내용: “옛날에 돌로 만든 말과 구리로 만든 낙타가 모두 가시덤불에 남아있다.”, 공자의 사당 뜰에 세워져 있는 형상들은 “모두 면류관을 쓰고 치마를 입었다.”
- 기자 사당에 대한 묘사

- “이러한 것들이 모두 기자로부터 그 풍도와 운치가 전해져 남은 것이고, 또한 중국에서 하는 것을 보고 본받은 것이라”고 하여, 중국의 영향과 기자의 유습을 강조. (p. 223)
- “이는 근본을 갖는다는 뜻은 비록 융숭하다 하더라도 예의에 맞게 비품을 갖추는 것이 소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이며, 어떤 측면에서 예의에 맞지 않고 소홀함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음.
- 동월은 기자의 사당에서는 4 배의 예를 행하고, 단군의 사당에서는 제배, 문묘에 가서 4 배의 예를 행했다고 함. (p. 224)
- 성불령, 자비령 근처를 지나며 → 원대에 자비령 이복의 땅으로 동녕부를 설치했던 역사를 거론하며 명에서 한 도(道)에 해당하는 것 보다도 넓은 영토를 조선에 모두 주었으니 “공손하고 온순하게 예의를 지킬 것”을 강조.
- “대게 왕씨가 이곳에서 왕 노릇을 한지 4 백 년이 지나, 요에 이르러 사리에 어둡고 미혹하여 비로소 이씨가 임시로 나라 일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고려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다스리며 서너 성이 바뀌었는데 단이 나라를 얻은 뒤에 조선이라는 옛 국호를 회복하게 해 달라고 청했다.” < “상께서 ‘동이의 호칭 가운데서 오직 조선만이 가장 아름답고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조서를 내려 ‘조선’이라 했다. “>
- 영조 의례(迎詔 儀禮)를 매우 상세하게 기술: 왕과 신하들의 예복을 갖추어 입고 교외까지 나가서 사신들을 맞이하고, 조서를 맞이하며 여는 백희(百戲)의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 → “비록 음성은 통하지 못하지만, 예의는 역시 취할 만한 것이 있었다” (p. 231)
- “날아오르는 봉황이 빛을 드러내 보이는 듯 굳세고 꾀꾀하다.”
- <“거리의 인가는 모두 (명조에서) 반포해서 내려준 예제(禮制)와 같이 채색 비단을 걸어놓았다.”>

- “침향과 단향이 새벽 해가 만드는 연무처럼 뿜어 나오고 복숭아꽃과 오얏꽃은 동풍에 날리는 비단처럼 곱다.”
- <“평양과 황주에서도 모두 오산(鰲山)과 채붕(綵棚)을 설치해서 백희를 펼치며 조서를 맞았지만 왕경의 것이 가장 좋았다.”><“(우리가) 가마를 탄 뒤에야 물러갔다.”>
- 성종은 황제의 사신들은 아무리 품계가 낮은 자라 하여도 제후보다 높은 반열에 있는데 동월과 그 부사는 심지어 천자의 가까운 신하이므로 감히 사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를 다해서 명사의 잔을 사양
- 연회장의 모습과 상차림, 음식, 의전에 대한 상세한 묘사.
- 태평관에서 세차례 연회 (下馬燕, 正燕, 上馬燕) + 인정전에서 사연(私燕)을 베풀. 처음에는 마땅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고쳐 바꾸는 것을 의논하려 했지만 태평관과 모화관 등 두 객관은 그 제도가 모두 궁전과 같고 오로지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맞이하기 위해 설치했으며, 일이 없을 때는 왕이 가지 않으며, 연회를 베풀 때마다 반드시 먼저 관문 밖의 작은 전각에 있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고집하지 않음.
- 조선 국왕의 극진한 명에 대한 예우와 명의 조선에 대한 자애롭고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도 언급
 - “대개 군주를 공경하면 그 사신에까지 미쳐지는 법이니, 예를 행함에 도탑게 하지 않을 수 없다.”
 - “울타리가 되는 것은 실로 소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찬란하게 땀이 나듯⁶ 누추한 곳에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물방울이나 티끌 같은 성의를 두루 다 내보인다 해도 갚을 수가 없다.”는 성종의 말에

⁶ 환한(渙汗), 즉 찬란한 땀이란 뜻으로 조칙(詔勅) 혹은 조서(詔書), 호령(號令) 등을 이르는 말. 땀이 한번 나오면 다시 되들어 갈 수 없는 것처럼 칙명(勅命)은 내려지면 취소할 수 없기 때문

동월은 “조정은 동국이 평소에 충성과 공경을 다한다고 해서 은전을 다른 나라와 다르게 베푼다.”라고 답변.

- 관행을 깨고 태평관에서 열린 하마연에서 전한 ‘인정물(人情物)’ 등 조선에서 제공하는 모든 예물을 거절함.
 - “전하께서 주심은 예이고 내가 받지 아니함은 조정을 두려워함이니, 각각 그 도를 다함이 가합니다.” (p. 227)
 - 성종이 “옛 사람이 ‘어진 이는 남에게 말을 주고 어질지 못한 자는 남에게 금을 준다’고 했다 하는데 … 보잘것 없는 물건으로 모독하였으니, 마음속으로 매우 황공스럽다. … ‘옛 사람은 그 천작(天爵)⁷을 닦으면 인작(人爵)⁸은 그대로 따라왔다’… 두 대인이야말로 실로 천작을 닦는 분”이라고 칭송.
 - 주석에서 대화 중에 조선 측 통역의 실수를 거듭 정정해 준 것을 언급하며 “아마도 장유는 중국말은 잘했지만 책을 읽은 것이 적고, 이승지는 책을 읽었지만 중국말에 서툴러서, 말을 전하며 땀을 흘려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특히 우스웠다.”라고 적고 있음.

● 세번째 부분: 성균관과 한성 시가, 한강 유람, 백성들의 풍습, 새와 물고기, 나물, 과일, 가축, 꽃, 산의 풍경, 금속 및 각종 물품 등에 관해 소개

- 조선의 풍습 가운데서 예에 어긋나는 것을 언급하면서, 과거에는 예에 어긋나는 풍습이 없잖아 있었지만 지금은 개선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조선인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도 받아들여 자신이 편찬할 실록에서 정정할 것을 약속. (p. 225)
 - “그 풍속에 과부들이 관과 역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더러움을 몹시 싫어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 와서 일하는 자들은 모두 주와 현의 관리들이었고, 부녀자들은 역 밖의 별실에서 밥을 짓고 있었다.”

⁷ 하늘이 준 벼슬이라는 뜻으로, 사람에게 갖추어진 자연의 미덕을 이르는 말.

⁸ 작위(爵位)와 관록(官祿) 등 사람이 정해준 지위

- 여기서 말하는 ‘부녀자’란 명사를 접대한 ‘여악(女樂)’들을 말하는데 환관 출신의 명사의 조선 방문 시에는 문제로 삼지 않았으나, 문학지사 출신의 명사들은 조서를 맞이하는 영조의 의례를 단속해서 ‘여악’을 거부하고 뇌물성 선물을 사양함으로써 자신의 예적 입장을 확보해둬. 동월이 ‘조선부’에서 ‘여악’의 부재를 전한 것은 곧 이러한 명사들의 공격적 예론에 대한 조선 측의 대응을 보여주는 것. (p. 226)
- 성종실록에 의하면 연회에 ‘여악’을 넣으려 하자 동월이 선황제의 상중임을 이유로 재차 사절하였음. 누차 권하면서 상제가 이미 끝났다고 하면서 다시 권하자 마지못해 기녀들을 뜰로 들이고 “이제 보았으니 멀리 나가도 좋다”라고 함. → 명사에 대한 예우와 책봉-조공 관계의 예를 강화하도록 조선측에 심리적 압박을 줌. (p. 226)

4. 조선의 기록을 통해 본 동월 (pp. 221- 241)

● 강직하고 청빈한 성품

- “경건하고 신중하게 예를 행함에 조금도 잘못이 없으니, 정대한 인물이라 할 만합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를 저질러도 모두 지적하여 바로잡았습니다. ... 필시 근래에 온 천사들이 모든 본국의 환관이어서 본국이 이들을 그대지 공경하지도 않고 중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본국이 또 환관을 대우하는 예로 대우할까 염려하여 이처럼 규찰하여 엄숙하게 삼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 동월의 예론 - 책봉과 조공의 예와 관련하여 동월은 조선의 예관들과 치열한 격론을 벌였으며 이후 조명관계에 중대한 선례가 됨.

- 예겸의 경우 세자가 친영례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는 않고 적당한 선에서 모르는 척 넘어가 줌.

- 영조의례는 책봉-조공 관계의 예제 가운데서 핵심을 이루는 중국 황제의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과 예.
- 명의 책봉 뿐 아니라 조선의 조공에 대해서도 강조 - “그들이 120 년 전부터 천자께 나아가 뵈고 풍성한 은혜를 입은 것이 비록 성명(聖明)께서 내려주신 것에서 말미암았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공물을 끊임없이 이어 바쳐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 예식에 대해 매우 꼼꼼하고 엄격:
 - 『대명집례(大明集禮)』, 『번왕의주(藩王儀註)』 - 번국(藩國)이 명의 사신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의례들을 작성한 것으로 명이 직접 편찬해서 번국에 전달
 - 조서를 맞이하는 곳을 그려오게 해서 행례(行禮) 절차를 익히고 예행연습을 했으며, 조선이 가져온 의주(儀註)를 고쳐올 것을 요구.
 - 조칙을 모신 용정이 있으면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나 용정이 없으면 국왕과 함께 정문을 통해 동서로 들어갈 수 있음.
 - 전각에 오르는 방향과 순서, 사사로이 인사를 할 때도 국왕이 두 사신에게 한꺼번에 절하는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절할 때는 부사와 상대함이 옳으며, 연회도 이와 같이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 ‘전하(殿下)’라는 두자는 본국의 신하가 높여서 칭할 때는 옳지만 조정의 사명에 대해서는 옳지 않으며, 『대명집례(大明集禮)』에 의거해서 ‘국왕(國王)’ 칭해야 한다고 주장.

● 조서(詔書)⁹를 맞이할 때 조선 국왕이 연(輦)을 탄 관행을 거부하고 말을 타도록 요구 → 심각한 논쟁과 갈등이 야기

- 조서(詔書)와 칙서(勅書)를 동시에 맞이하는 것이 오랜 전례라고 하며 조선은 강력하게 반발

⁹ 기록에 의하면 진시황은 명을 ‘제(制)’, 령을 ‘조(詔)’라 하게 했으며, 한나라 초기에 명령을 4 품(品)으로 나누어, 책서(策書), 제서(制書), 조서(詔書), 계칙(戒勅)이라 함. (조선부, 각주 47)

- “국왕이 말을 타고 초라하게 위의(威儀) 없이 할 수 없다”;
 - 명나라가 조선을 존중함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말을 타면 그 경대(敬待)하는 뜻이 어떻게 되겠는가;
 - 『번왕의주(藩王儀註)』 에도 말을 탄다거나 연을 탄다는 문장이 없다.
- 동월은 조선 국왕이 연을 타면 자신들은 걸어서 가겠다며 고집을 부림.
 - 결국 “만약 연을 타고 조서를 맞이하면 우리는 칙서를 받들고 모화관에 유숙하겠으니, 그 이튿날 말을 타고 칙서를 맞이하시라”¹⁰는 타협책을 제시.
 - 동월이 처음으로 주장해서 시행한 이후 관행으로 자리잡게 됨.
 - 성종 23 년에 명사 애박이 왔을 때 다시 예전으로 돌리려고 했으나 애박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고집하여 동월의 의주대로 따르게 됨
 - 조선의 문례관이 동월이 조서와 칙서를 나누어 받아야 하는 근거를 알 수 없고, 동월의 부사인 왕창이 경박한 사람이라 사주한 것이라 하자 성종은 소국이 대국과 예를 다룰 수 없다고 하면서 동월의 의례대로 결정.
 - 조관(朝官) 즉 유신(儒臣)이 사신으로 올 때는 동월이 확립한 의주에 따르도록 강요하겠지만 환관이 사신으로 나올 때는 굳이 국왕이 말을 타도록 강요하지는 않았고, 유신 가운데서도 의견이 다른 이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함께 맞이하는 의주와 나누어 맞이하는 의주 등 두 건을 모두 만들어 문예관을 시켜 고르게 함. 여악과 남악을 쓰는 것도 천사가 원하는 대로 따르도록 교지를 내림.

¹⁰ 조서를 받들고 들어가서 조서를 반포하고 조선의 국왕이 조서를 받는 예를 마치면, 사신들이 나오고 조선의 국왕이 나와서 말을 타고 칙서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칙서를 받는 예를 마친 뒤 서로 만나는 예를 행하는 것으로 결론 → 명사가 조서와 칙서를 받들고 모화관에 이르러 각각 용정(임금의 조서나 옥책 금보 따위를 옮길 때 쓰는 가마의 한가지)에 안치하고 칙서는 장전(帳殿)(임시로 꾸민 임금이 앉는 자리)에 머물러두게 함. 조선 왕이 조서를 인도하여 연을 타고 앞서가고 명사는 말을 타고 조서를 뒤따라가서, 경복궁에 이르러 조서를 반포. 명사가 다시 나와서 모화관으로 가니 왕이 익선관에 곤룡포를 갖춰 입고 돈의문을 통해 나가서 칙서를 맞이했는데 이때는 말을 타고 칙서를 인도하여 경복궁에 이르러 칙서를 받는 의식을 치렀음. (pp. 236-7)